

인천광역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 인천광역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905
----------	-----

제출년월일 : 2009. 10.

제 출 자 : 인천광역시장

## 1. 제안이유

가. 「도로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현 실정에 맞게 관련 조례를 정비하여 행정의 적법성을 확보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가. 「도로법 시행령」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비함.

(안 제2조, 안 제4조제1항)

나.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함.

## 3. 참고자료

가. 실·국별 의견수렴과 입법예고 결과(4쪽)

나. 관련법령 검토와 발취사항(5쪽)

## 인천광역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외의 본문 중 “「도로법 시행령」 제24조제5항제11호 규정에 의하여”를 “「도로법 시행령」 제28조제5항제9호에 따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도로법 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도로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로, “「도로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도로법」 제94조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지방세법」 제41조 규정에 의한 기타”를 “「지방세법」 제41조 각 호에 해당하는”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제1항제2호의 규정”을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제1항제2호”로 한다.

제7조제3항 중 “제2항 규정에 의한”을 “제2항에 따른”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도로점용허가 대상) 공작물, 물건 기타의 시설로서 「도로법 시행령」 제24조제5항제11호 규정에 의하여 관리청이 정하는 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p>1.~3.(생략)</p>	<p>제2조(도로점용허가 대상) ----- ----- 제28조제5항제9호에 따라----- ----- ----- 1.~3.(현행과 같음)</p>
<p>제4조(점용료의 부과·징수) ① 「도로법」 제38조 및 「도로법 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도로를 점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점용료를 부과·징수하고,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한 자에 대하여는 「도로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하여 변상금을 부과·징수한다.</p> <p>② 점용기간이 1년이상이거나 「지방세법」 제41조 규정에 의한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점용료를 분납케 하거나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p> <p>③(생략)</p>	<p>제4조(점용료의 부과·징수) ①-----제28조에 따라----- ----- ----- ----- -----제94조에 따라----- ②----- 제41조 각 호에 해당하는----- ----- ----- ③(현행과 같음)</p>
<p>제5조(점용료의 감면) ①(생략) ②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점용료의 감면율은 80퍼센트로 한다.</p>	<p>제5조(점용료의 감면) ①(현행과 같음) ②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제1항제2호----- ----- -----</p>
<p>제7조(징수금의 귀속) ①~②(생략) ③ 시장은 제2항 규정에 의한 성과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군·구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경우에는 객관적인 평가 및 지급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p>	<p>제7조(징수금의 귀속) ①~②(현행과 같음) ③----- 제2항에 따른 ----- ----- ----- -----</p>

## 실·국별 의견수렴과 입법예고 결과

검 토 구 분		유	무
검토사항	1. 관련법령 위배여부 등 검토 2. 행정규제, 물가대책위, 부패영향평가 등 심의 3. 조직 및 예산수반 협의 4.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여부 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여부 6. 기타 문제점		○ ○ ○ ○ ○ ○
<b>실·국별 의견수렴결과</b>			
협의개요	실·국별	제출의견	검토내용
○ 기 간 - '09.6.29 ~7.20  ○ 방 법 - 의견수렴		“해 당 없 음”	
<b>입 법 예 고 결 과</b>			
예고개요	의견제출자	의견수렴결과	반영여부
○ 기 간 - '09.6.29 ~7.20  ○ 방 법 - 시보 및 인터넷 게시		“해 당 없 음”	

# 관련법령 검토 및 발췌사항

<b>관계 법령</b>	<p><input type="checkbox"/> 도로법 시행령</p> <p><b>제28조 (점용의 허가신청)</b> ①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점용장소·점용기간·공작물 또는 시설의 구조 등 점용에 관한 사항은 별표 1의 기준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점용의 목적</li> <li>2. 점용의 장소와 면적</li> <li>3. 점용의 기간</li> <li>4. 공작물 또는 시설의 구조</li> <li>5. 공사시설의 방법</li> <li>6. 공사의 시기</li> <li>7. 도로의 복구방법</li> </ol> <p>② 도로의 점용이 도로의 굴착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 주요지하매설물의 사후관리계획(신청인이 주요지하매설물의 관리자인 경우에 한한다)과 제34조에 따른 도로관리심의회의 심의·조정 결과를 반영한 안전대책 등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p> <p>③ 관리청이 제1항의 신청에 대하여 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신청인에게 허가증서를 발급하고, 허가내용을 공고하여야 하며,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의 점용이 도로의 굴착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허가내용의 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p> <p>④ 도로굴착공사를 수반하는 도로점용의 허가를 받은 자는 공사기간 중에 사람들이 보기 쉬운 장소에 그 허가내용을 내걸어야 한다.</p> <p>⑤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도로의 점용허가(법 제5조에 따라 다른 국가사업에 관계되는 점용인 경우에는 협의 또는 승인을 말한다)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물건, 그 밖의 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전주·전선·변압탑·공중선·우체통·공중전화·무선전화기지국·종합유선방송용단자함·발신전용휴대전화기지국,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li> <li>2. 수도관·하수도관·가스관·송유관·전기통신관·송열관·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작업구(맨홀)·전력구·통신구·공동구·배수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li> <li>3. 주유소·주차장·여객자동차터미널·화물터미널·자동차수리소·승강대·화물적치장·휴게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과 이를 위한 진·출입로</li> <li>4. 철도·궤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li> <li>5. 지하상가·지하실·통로·육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li> <li>6. 간판·표지·깃대·주차측정기·현수막 및 아치</li> <li>7. 공사용 판자벽·발판·대기소 등의 공사용 시설 및 자재</li> <li>8. 고가도로의 노면 밑에 설치하는 사무소·점포·창고·주차장·광장·공원, 체육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li> <li>9. 제1호부터 제8호까지 외에 관리청이 도로구조의 안전과 교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한 공작물·물건(식물을 포함한다) 및 시설로서 국토해양부령 또는 해당 관리청의 조례로 정한 것</li> </ol>
<b>관련법규 정비대상</b>	“해 당 없 음”
<b>관련자료</b>	“해 당 없 음”